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65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군 간부 급여 비과세 소득규정 신설(강선영의원안)	2

I . 개요

1.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65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8.

(3) 회 부 일 : 2025. 4.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가목).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군 간부 급여 비과세 소득규정 신설(강선영의원안)

현 행	강선영의원안
☐ 비과세 근로소득(제12조제3호) ○ 병(兵) 급여, 요양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 <u><신 설></u>	☐ <u>비과세 근로소득에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받는 급여 항목 추가</u> ○ (현행과 같음) ○ <u>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병역법」 제18조제2항 각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정)</u> ○ <u>시행일: 공포 후 6개월</u> ○ <u>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u>

* 강선영의원안 2025. 4. 8. 발의(의안번호 9650)

☐ 개정안은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를 추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장병간 봉급 역전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임.

☐ 최근 ① 현역병의 봉급은 크게 증가하여 왔으나, 군 간부의 급여 인상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급여 차이가 감소하였고, ② 현행법상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인 반면, 초급간부의 봉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봉급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¹⁾

1) 2025년 기준 병장은 월 205만원 수준의 실수령액을 받는 반면(기본급 150만원, 내일준비적금 정부매칭지원금 55만원), 초급간부인 하사 1호봉의 경우 기본급 230만 5,900원(기본급 200만 900원, 직급보조비 16만 5,000원, 정액급식비 14만원)에서 군인연금기여금(15,160원)과 소득세(약 7~8만원)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약 207만원 수준으로, ‘소득 역전’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임.

개정안은 이와 같은 요인들이 군 간부 지원을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초급간부가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병 복무기간²⁾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받는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군 초급간부의 가처분 소득 증가를 통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군 간부 지원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복무 중인 병장 이하의 현역병 등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³⁾,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한편, 최근 현역병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대폭적인 급여 인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2011년 기준 10만 3,000원이던 병장의 월급은 2025년 15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음. 그러나 현역병의 급여 상승률 대비 군 간부 급여 상승률이 낮아 군 간부 급여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고, 이에 사관학교, 학군사관 및 학사사관 등 장교후보생에 대한 지원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2)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연도별 병장 이하 현역병 봉급 현황]

(월 기준, 단위: 원)

구분	2011년	2015년	2018년	2021년	2025년
병장	103,800	171,400	405,700	608,500	1,500,000
상병	93,700	154,800	366,200	549,200	1,200,000
일병	84,700	140,000	331,300	496,900	900,000
이병	78,300	129,400	306,100	459,100	750,000

자료: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13] 군인의 봉급표

[연도별 장교 및 부사관 봉급 현황]

(1호봉 기준, 월 기준, 단위: 원)

구분	2011년	2015년	2018년	2021년	2025년
대위	1,469,300	1,699,900	2,291,200	2,436,400	2,710,100
중위	1,129,500	1,306,800	1,777,500	1,890,200	2,163,900
소위	1,024,000	1,184,800	1,624,400	1,727,400	2,017,300
상사	1,318,700	1,525,700	2,054,900	2,185,200	2,384,500
중사	1,049,600	1,214,400	1,657,400	1,762,500	2,046,400
하사	879,300	1,017,300	1,458,800	1,678,100	2,000,900

자료: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13] 군인의 봉급표

[2019년~2023년 사관학교 및 장교후보생 경쟁률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관 학교	육군사관학교	44.4 : 1	26.2 : 1	24.4 : 1	25.8 : 1	28.9:1
	해군사관학교	19.2 : 1	21.7 : 1	20.7 : 1	18.7 : 1	25.1:1
	공군사관학교	48.7 : 1	22.9 : 1	20.6 : 1	21.4 : 1	30.2:1
	간호사관학교	44.3 : 1	27.7 : 1	26.5 : 1	27.1 : 1	33.9:1
	육군 3사관학교	6.0 : 1	4.7 : 1	4.5 : 1	3.6 : 1	3.2:1
장교 후보생	학군사관후보생	3.1 : 1	2.7 : 1	2.6 : 1	2.4 : 1	1.8:1
	학사사관후보생	3.3 : 1	2.7 : 1	2.6 : 1	2.6 : 1	2.4:1
	장교후보생 총괄	3.1 : 1	2.7 : 1	2.6 : 1	2.5 : 1	2.0:1

자료: 「2024 국방통계연보」, 국방부, 2024.11.28.

□ 개정안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초급간부의 복무기간 중 병의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초급간부의 급여수준이 개선되어 군으로의 우수한 인력유입 유인을 제고하고 초급간부의 지원율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001년 대비 2022년의 현역병 및 장교의 급여를 비교해보면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률은 3.1배~3.5배로, 현역병의 인상률 34.0배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로 증가하였음.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률 4.9배보다 낮은 증가율로서 2015년 이후 초급간부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⁴⁾.

4)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2022.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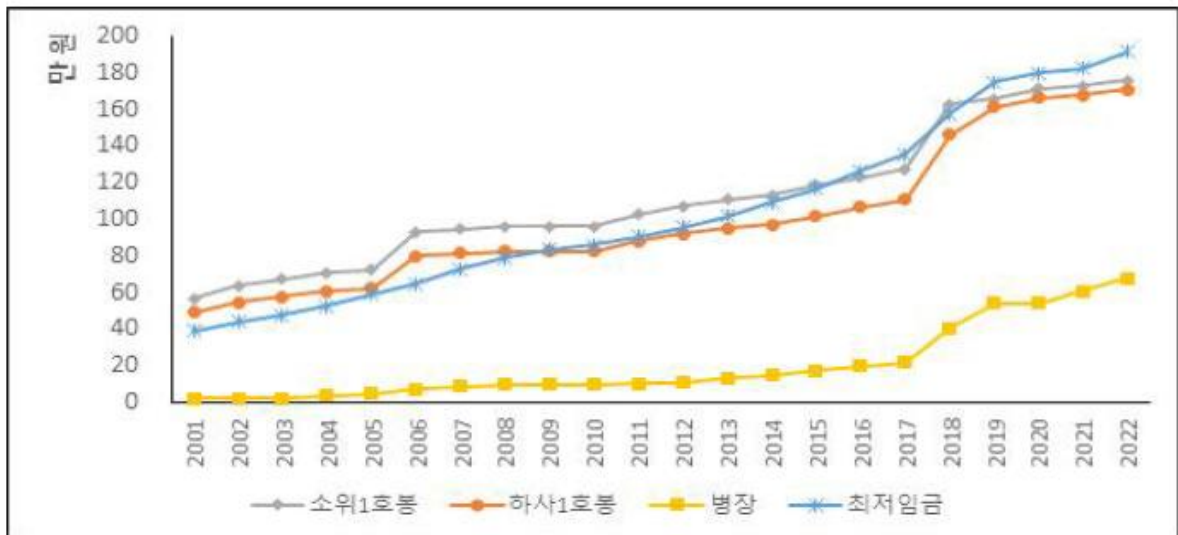
[2001년 대비 2022년 현역병·장병 급여 및 최저임금 인상률]

구 분	2001년(A)	2022년(B)	배수(A/B)
장 교	57만원	176만원	3.1배
부사관	49만원	171만원	3.5배
병장(兵)	2만원	68만원	34.0배
최저임금	39만원	191만원	4.9배

* 간부 급여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수치

자료 :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 연구센터, 2022.12.20.

[소위·하사·병장 및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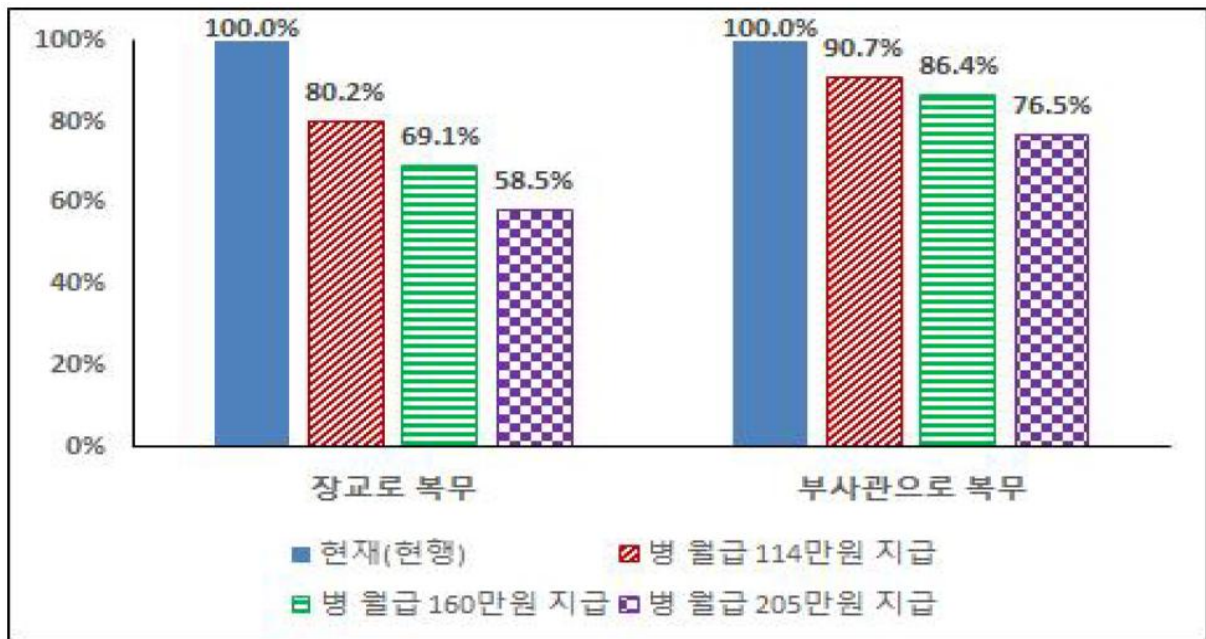


자료 :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 연구센터, 2022.12.20.

또한, 병 급여 인상으로 군 간부와와의 상대적으로 급여수준 격차가 감소할 때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로의 지원 의사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연구결과⁵⁾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초급간부의 지원을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2022.12.20.

[병 급여 인상 시, 군 간부 지원 의사 변화]



자료: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 연구센터, 2022.12.20.

또한 병역의무를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여 이행하는 경우⁶⁾, 현행법상 현역병과 그 성격이 유사한 의무복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간동안 장교나 부사관으로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부사관 및 장교, 준사관이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동안 지급받는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할 경우, 병역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역병과 장교 등 초급간부의 급여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6) 군법무관(법무장교), 군의관(의무장교), 군종장교(군목, 군승 등), 군수의관(수의 장교) 등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고 있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한 급여로서 비자발적 동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장교·부사관 등 초급간부의 급여는 개인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따라 직업인으로서 수행하는 군 복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성격상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상이함.

□ 둘째, 군 간부 지원을 제고를 위해 국방부가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는 초급간부 지원을 제고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단기복무 간부 장려금 및 수당 인상⁷⁾, 초급간부 수당 인상 및 수당체계 개편 등을 통해 초급간부에 대한 보수수준을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간부 숙소 1인 1실화·국민 평형 관사 확대 및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⁸⁾.

2025년 정부 예산 기준 군인 가족과 초급간부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 5,260억원이던 예산이 7,863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 중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 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을 6,048억원을 편성한 바 있음. 또한 2026년 예산안에는 ① 5

7) *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 ('22년) 600만원 → ('23년) 900만원 → ('24년) 1,200만원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 ('22년) 500만원 → ('23년) 750만원 → ('24년) 1,000만원

8)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국방부 보도자료, 2023. 12. 10.

년 미만 초급간부에 대해 일반 공무원 급여 인상률의 2배인 6.6%의 인상률로 보수를 인상하고, ②장기복무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의 내일준비적금 매칭 자금을 지원하며, ③당직비를 평일 2만원, 주말 3만원에서 각각 4만원, 6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2025년(14.4조원) 대비 0.7조원 증액한 15.1조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셋째, 군 초급간부 급여에 대한 비과세가 입법화되는 경우 경찰·소방공무원 등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직역 급여에 대한 비과세 요구로 이어져 과세형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지출보다는 예산조치 등을 통해서 초급간부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에서 장교, 부사관 등과 같이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려는 준사관(준위)은 민간인이 시험을 쳐서 임관하거나, 부사관이 상사 이상의 계급에서 시험 등 별도 전형을 거쳐 도달하는 계급임.

후자의 경우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초급간부에 해당하는 준사관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도록 법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장교 및 부사관 등에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6년 324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1,376억원(연평균 2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강선영의원안	△324	△329	△230	△245	△248	△1,376	△2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9